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77
----------	------

2024년 11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제326회 임시회 당시 20,000백만원 출자 동의를 기 완료하였으나 금번 목동 공동구 인근 열수송관 누수사고('24.9.13.)의 추가 대책 마련 및 노후 열수송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추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출자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24,000백만원 출자
 - (기존) 20,000백만원 → (변경) 24,000백만원
 - ※ 제326회 임시회 20,000백만원 출자 동의 완료

〈서울에너지공사 연도별 추진(예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당초 계획	659	59	200	140	200	60
변경 계획	699	59	200	140	240	60

□ 필요성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특히, 목동 공동구 노후 배관은 '87년에 준공된 대형 열수송관으로 사고 시 대규모 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체계 개선 시급.
- 노후 열수송관 관리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금을 변경하여 출자하고자 함.
 - '25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 214억원
 - ※ 제326회 임시회 출자 동의 200억원
 - 공동구 노후 열수송관 파손 대책 : 26억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공동구 주변 열수송관 누수사고 대응을 위해 2025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금액을 당초 20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 등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2019년(추경)부터 2024년까지 총 2,425억원(현금 1,976억원, 현물 449억원) 규모의 출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으며, 출자계획 변경으로 실제 5,754억원(현금 1,720억원, 현물 4,034억원²⁾)이 출자되었음.
-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출자 동의 이후 목동 공동구³⁾ 주변에서 열수송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24.9.13), 이에 따른 공동구 열수송관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에 기인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음.
- 세부적으로 공동구⁴⁾ 내 차수관(4억원) 및 감시센서(10억원) 설치, 공동구 신축이음(20억원) 보강 및 주변 열수송관 센서(4억원) 설치, 서남 지역 환상망⁵⁾ 기본구상 용역(2억원) 수행을 위하여 총 4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시 시설을(목동, 노원, 마곡(1단계)) 공사로 이관하여 현물출자 급증

3) 목동 아이스링크 앞

4)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기 위한 시설

5) 환상망 : 열수송관 이중망(우회망)으로 설치 시 열공급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2277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나. 제326회 임시회 당시 20,000백만원 출자 동의를 기 완료하였으나 금번 목동 공동구 인근 열수송관 누수사고('24.9.13.)의 추가 대책 마련 및 노후 열수송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 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추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 변경개요

- 대 상 :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 24,000백만원 출자
 - (기존) 20,000백만원 → (변경) 24,000백만원

※ 제326회 임시회 20,000백만원 출자 동의 완료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당초계획	659	59	200	140	200	60
	변경계획	699	59	200	140	240	60

나. 출자 변경 필요성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특히, 목동 공동구 노후 배관은 '87년에 준공된 대형 열수송관으로 사고시 대규모 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체계 개선 시급
- 노후 열수송관 관리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금을 변경하여 출자하고자 함
 - '25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 214억 ※ 제326회 임시회 출자동의 200억
 - 공동구 노후 열수송관 파손 대책 : 26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③ 항 생략

나. 예산조치 : '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보영(☎ 2133-3554)